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규 약

(2020 년)

차 례

제1장	총칙 (제 1 조-제 10 조).....	2
제2장	성원단체 (제 11 조-제 21 조).....	5
제3장	명예위원장, 명예위원 (제 22 조).....	11
제4장	기구 (제 23 조-제 58 조).....	11
	총회 (제 25 조-제 36 조).....	13
	집행위원회 (제 37 조-제 40 조).....	19
	위원장 (제 41 조).....	22
	서기국 (제 42 조-제 43 조).....	22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제 44 조-제 52 조).....	23
	기타 기구 (제 53 조-제 55 조).....	25
	법률집행기구 (제 56 조-제 58 조).....	26
제5장	제재 (제 59 조).....	28
제6장	중재 (제 60 조-제 62 조).....	29
제7장	재정 (제 63 조-제 66 조).....	30
제8장	경기대회, 경기대회 및 행사에 대한 권리 (제 67 조-제 69 조).....	31
제9장	국제경기 및 경기대회 (제 70 조-제 72 조).....	31
제10장	마감조문 (제 73 조-제 76 조).....	32
(부록)	총회진행절차(제 1 조-제 8 조).....	34

제1장 총칙

제 1 조 법적형태, 본부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이 아래부터는 《협회》라고 함)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인정을 받은 국가적범위의 비영리 체육협회이다. 협회의 존재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으며 영문약칭은 《DPRKFA》이다.
2. 본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에 위치하고있으며 협회 총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다른 곳으로 옮길수 있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축구연맹의 성원협회이다.

제 2 조 사명

협회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축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특히 후비육성 및 발전계획들을 통하여 축구를 공정한 경기의 원칙과 단합적, 교육적, 문화적, 인도주의적견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규범에 부합되게 장려, 규제 및 관리하는것이다.
2. 국가적범위에서 축구경기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것이다.
3. 축구경기 및 그와 련관된 모든 문제에 대한 규정과 조항들을 제정하고 실시하는것이다.
4. 협회성원단체(이 아래부터는 《성원단체》라고 함)들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태의 축구활동을 관리, 감독하고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축구연맹, 협회의 규약, 규정, 규칙, 지시, 결정과 국제축구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성원단체들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것이다.

6. 부정부패행위, 도핑사용, 경기조작행위와 같이 경기와 경기대회, 성원단체, 선수, 감독, 기타 축구관계성원들의 체육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축구의 람용을 조장시킬수 있는 모든 수단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결백성과 룰리, 공정한 경기를 장려하는것이다.
7. 국가적범위에서 훌륭한 관리원칙들을 보급하고 성원단체들도 훌륭한 관리원칙들을 구현하도록 장려하는것이다.
8. 여자축구를 발전시키고 축구관리 및 기술의 각 부문에 여성들이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9.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축구에 참가하고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축구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하며 그를 위한 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이다.
10.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다른 나라 축구협회, 기타 단체, 축구관계성원들과의 친선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이다.
11. 국제경기대회들과 기타 경기대회들을 주최하는것이다.

제 3 조 인권

협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모든 인권을 존중하며 인권의 보호를 적극 장려한다.

제 4 조 차별반대, 평등의 원칙

인종, 피부색, 민족, 국가적 및 사회적성분, 성별, 신체장애, 언어, 종교, 정견 또는 기타 견해, 재산정도, 출신 또는 기타 신분관계를 비롯한 리유로 국가나 개인, 단체를 차별하는 온갖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자격정지나 자격박탈, 기타 규률제재를 준다.

제 5 조 중립, 독자성의 원칙

1. 협회는 정치와 종교적인 문제에서 중립을 지킨다.
2. 성원단체는 정치와 종교적인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며 성원단체에

소속된 성원들도 중립을 지키도록 한다.

3. 협회는 독자성의 원칙을 지키며 모든 형태의 정치적간섭을 배격한다. 협회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제 3 자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친선적인 관계의 장려

1. 협회는 성원단체, 선수, 감독, 기타 축구관계성원들간의 친선적인 관계 그리고 인도주의적목적으로부터 사회의 친선적인 관계를 장려한다.

2. 협회는 성원단체, 선수, 감독, 기타 축구관계성원들간에 발생할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선수

1. 협회집행위원회는 효력을 가지고있는 국제축구련맹 선수지위 및 이전규정에 준하여 선수지위와 선수등록 및 이전에 관한 규정적 조항들을 제정한다.

2. 선수등록은 협회의 선수지위 및 이전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 8 조 축구경기규칙

1. 협회와 모든 성원단체는 국제축구협회리사회가 발표한 국제축구경기규칙에 준하여 축구경기를 진행한다. 국제축구협회 리사회만이 국제축구경기규칙을 제정 및 수정할수 있다.

2. 협회와 모든 성원단체는 국제축구련맹이 발표한 실내축구 경기규칙과 모래터축구경기규칙에 준하여 실내축구와 모래터축구 경기를 진행한다. 국제축구련맹만이 실내축구경기규칙과 모래터축구 경기규칙을 제정 및 수정할수 있다.

제 9 조 단체, 개인의 활동준칙

1. 이 규약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자기의 활동에서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 축구련맹, 협회의 규약, 규정, 규칙, 지시,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규약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지배를 받는 모든 단체와 개인은 성실성과 청렴결백성, 체육정신, 공정한 경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0 조 공식언어

1. 협회의 공식언어는 조선어이다. 대외사업에서는 영어를 리용할수 있다.
2. 협회의 모든 공식문건에서는 조선어를 기준으로 한다.

제2장 성원단체

제 11 조 가입, 자격정지, 제명

1. 성원단체의 협회가입, 자격정지 및 제명은 협회총회에서 결정한다.
2. 협회가입을 신청하는 단체는 이 규약에 따르는 기준사항들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가입할수 있다. 오직 법인만이 성원단체로 될수 있다.
3. 성원자격은 탈퇴 또는 제명의 방식으로 종료된다. 성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해도 해당 단체가 협회나 다른 성원단체들에게 가지고있는 재정적의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협회로부터 부여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다.

제 12 조 성원단체

협회의 성원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구락부
2. 지역협회

제 13 조 가입

1. 협회에 가입할것을 희망하는 단체는 협회서기국에 서면신청 문건을 내야 한다.
2. 가입신청문건에는 다음의 문건들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 1) 법적효력이 있는 신청단체의 규약과 가능한 경우 규정들의 사본
 - 2) 협회와 국제축구련맹,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축구련맹의 규약과 규정, 규칙, 결정을 언제나 준수할것이며 소속단체, 선수, 감독, 단체성원 및 기타 모든 축구관계성원들도 준수하도록 할것이라는 선언서
 - 3) 효력을 가지고있는 국제축구협회리사회의 국제축구경기규칙과 국제축구련맹의 실내축구경기규칙, 모래터축구경기규칙을 준수할것이라는 선언서
 - 4) 이 규약에 규제된바와 같이 협회가 인정하는 중재재판소와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체육중재재판소를 인정한다는 선언서
 - 5) 신청단체가 법적구성상 외부의 개입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릴수 있다는것을 담보하는 선언서
 - 6) 완전한 독자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자기 단체의 기구 성원들을 선거 또는 임명하였다는 선언서
 - 7) 법적효력이 있는 단체등록문건사본
 - 8) 제 3 자와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성원들을 포함한 단체일군명단
 - 9) 오직 협회의 사전동의하에서만 친선경기를 조직하거나 친선 경기에 참가할것이라는 선언서
 - 10) 신청단체가 구락부인 경우 모든 본거지경기를 협회의 영역내에서 진행할것이라는 선언서
 - 11) 신청단체가 구락부인 경우 구락부에 소속된 선수, 감독명단
 - 12) 신청단체가 구락부인 경우 협회가 요구하는 시기에 국가 대표팀들에 구락부선수들을 보내줄것이라는 선언서

제 14 조 가입신청 및 절차

1. 협회집행위원회는 가입신청의 접수 또는 부결에 대한 의견을 총회에 제기한다. 신청단체는 총회에서 신청리유를 진술할수 있다.
2. 가입이 승인된 단체는 즉시 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해당 단체의 대표들은 즉시 투표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5 조 성원단체의 권리

1. 성원단체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협회총회에 참가할 권리와 총회안건을 사전에 받을 권리, 제정된 기일전에 총회소집통지를 받을 권리, 총회에서 토의에 참가하고 투표할 권리
 - 2) 총회안건에 포함시킬 문제를 제기할 권리
 - 3) 협회의 모든 기구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권리
 - 4) 협회의 기구들로부터 협회의 사업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
 - 5) 협회가 조직하는 경기대회(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체육 활동에 참가할 권리
 - 6) 협회규약과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행사할 권리
2. 위의 권리들은 이 규약의 기타 조항들과 해당 규정들에 준하여서만 행사할수 있다.

제 16 조 성원단체의 의무

1. 성원단체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축구련맹, 협회의 규약, 규정, 규칙, 지시, 결정을 언제나 철저히 준수하며 소속단체들도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 2) 최소 4 년에 한번씩 자기 단체의 의사결정기구들을 선거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 3) 협회가 조직하는 경기대회(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기타 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4) 국제축구협회리사회가 제정한 국제축구경기규칙과 국제축구련맹이 제정한 실내축구경기규칙과 모래터축구경기규칙을 준수하며 소속단체들도 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5)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축구련맹, 협회의 규약, 규정, 규칙, 지시, 결정과 관련하여 자기 단체나 단체에 소속된 성원들이 련루된 분쟁은 마지막심의단계에서 즉 협회의 내부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축구련맹, 협회가 인정하는 중재재판소나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체육중재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일반재판소에 의뢰하는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6) 자기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며 제 3 자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

7) 완전한 독자성이 담보되는 절차에 따라 자기 단체의 기구 성원들을 선거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8) 자기 단체의 규약이나 규정을 수정하려는 경우와 제 3 자와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체결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성원들이나 단체일군들의 명단이 달라지는 경우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9) 협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단체나 자격정지 또는 제명된 성원단체와 체육교류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10) 공정한 경기를 위하여 성실성, 청렴결백성, 고상한 체육도덕 품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협회에 소속되어있는 기간 이 규약 제 13 조 2.에 규제된 의무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소속단체들을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13) 협회규약의 기준에 부합되는 단체규약을 채택하여야 한다.

14)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축구련맹, 협회의 규약과 기타 규정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규약에 따르는 제재를 받는다.
3. 우의 1. 6)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3 자의 간섭이 해당 성원단체의 잘못으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해도 제재를 줄수 있다. 협회의 모든 성원단체는 과실로 인한것이든 고의적인것이든 자기 단체 기구성원들의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협회앞에 책임진다.

제 17 조 자격정지

1. 성원단체에 대한 자격정지처벌은 협회총회에서 준다. 그러나 성원단체의 의무위반행위가 엄중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협회집행위원회가 잠정적으로 자격정지처벌을 줄수 있으며 이것은 즉시 효력을 가진다. 집행위원회가 준 자격정지처벌은 집행위원회가 해제하지 않는 한 다음번 총회까지 효력을 가진다.
2. 협회총회에서 성원단체에 자격정지처벌을 주려면 총회에 참가한 유권대표들의 3 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협회집행위원회가 준 자격정지처벌은 다음번 총회에서 참가한 유권대표들의 3 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확정된다. 총회에서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 자격정지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3. 자격정지된 성원단체는 성원단체로서의 권리를 상실한다. 다른 성원단체들은 자격정지된 성원단체와 체육교류를 가지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규률 및 룰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수 있다.
4. 협회의 공식경기들에 연속 3 회이상 참가하지 않는 성원단체는 경기참가의무를 리행할 때까지 총회투표권을 상실한다.

제 18 조 제명

1. 다음의 경우 협회총회에서 성원단체를 제명할수 있다.
 - 1) 협회에 대한 재정적의무를 거둬 리행하지 않았을 경우
 - 2) 국제축구련맹과 아시아축구련맹, 동아시아축구련맹, 협회의 규약, 규정, 규칙, 지시, 결정을 엄중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 성원단체를 제명하는 투표가 성립하려면 총회에 50%가 넘는 유권성원단체들이 참가하여야 하며 제명안이 채택되려면 유권대표들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 19 조 탈퇴

1. 성원단체는 협회로부터 탈퇴할수 있으며 이것은 다음해부터 효력을 가진다. 연말 3 개월전까지 탈퇴통지서를 협회서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탈퇴는 협회와 다른 성원단체들에 대한 재정적의무를 다 리행한 다음에야 효력을 가진다.

제 20 조 성원단체와 단체기구들의 독자성

1. 성원단체는 제 3 자의 부당한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성원단체의 기구성원들은 그 단체에서 선거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성원단체의 규약에는 기구성원들에 대한 선거 또는 임명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절차가 규제되어있어야 한다.
3. 협회는 위의 2.에 따라 선거 또는 임명되지 않은 성원단체기구는 임시적인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는다.
4. 협회는 위의 2.에 따라 선거 또는 임명되지 않은 성원단체기구가 내린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

제 21 조 구락부, 지역협회, 기타 단체들의 지위

1. 협회에 가입한 구락부, 지역협회 및 기타 단체들은 협회에 종속되고 협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최상급국내련맹전이 오직 1 개 있어야 한다.
2. 이 규약은 위의 1.에서 언급한 단체들의 권한과 권리, 의무를 정의한다. 상기 단체들의 규약과 규정은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회는 심판사업과 반도핑투쟁, 선수등록, 구락부자격 그리고 룰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한 위반행위들에 대한 제재와 경기대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에 대하여 규제할 기본책임을 지닌다.

3. 위의 1.에서 언급한 단체들은 성원활동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외부의 간섭이 없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단체의 기구구조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4. 그 어떤 경우에도 경기 또는 경기대회의 공정성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임의의 법인이나 자연인은 1 개이상의 구락부를 관할할수 없다.

제3장 명예위원장, 명예위원

제 22 조 명예위원장, 명예위원

1. 축구에 특출한 공헌을 한 성원에게 총회에서 명예위원장 또는 명예위원의 직제를 줄수 있다.
2. 이와 관련한 추천은 집행위원회가 한다.
3. 명예위원장이나 명예위원은 총회에 참가할수 있다. 그들은 문제토의에는 참가할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4장 기구

제 23 조 협회기구

1. 총회는 협회의 최고립법기구이다.
2. 집행위원회는 협회의 집행기구이다.
3.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집행위원회의 사업을 보좌한다.
4. 서기국은 협회의 행정관리기구이다.
5. 구락부자격기구는 협회의 구락부자격체계사업을 책임진다.
6. 선거위원회는 협회선거규칙에 준하여 협회의 선거과정을

감독한다.

7.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는 협회의 재정문제와 법준수문제를 감독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사업을 방조하고 감시한다.
8. 법률집행기구들로는 규률 및 룰리위원회와 상소위원회가 있다.
9. 협회기구성원은 외부의 간섭이 없이 이 규약에 밝힌 절차에 따라 협회가 자체로 선거하거나 임명한다. 협회기구성원은 해당 직위와 배치되는 범죄를 범하였던 경력이 없어야 한다.
10. 협회기구성원은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수 있는 우려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문제토의나 결정채택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기구성원은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국제축구연맹 룰리규정의 해당 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준수하며 필요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조절하여야 한다. (예: 자기의 직무수행을 중단하거나 기구책임자에게 이해관계의 충돌의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하는것)

제 24 조 기구성원의 해임

1. 총회에서 기구성원을 해임할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법률집행기구와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기타 기구성원들을 잠정적으로 해임할수 있다. 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 잠정적인 해임조치는 집행위원회가 해제하지 않는 한 다음번 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한다. 다음번 총회가 선거총회인 경우 해임된 성원은 총회에서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그의 해임문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조건에서 선거후보자로 나설수 있다. (후보자자격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2. 해임제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당 안건과 함께 해임제안을 집행위원회 성원들이나 성원단체들에 보내주어야 한다.
3. 해임문제가 상정된 기구성원은 집행위원회나 총회에서 자신을 변호하여 발언할수 있다.
4. 집행위원회나 총회에서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해임을 결정한다. 해임제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유효한 지지표를 받아야 한다.

5. 해임된 성원은 즉시 자기의 직무를 상실한다. (잠정적인 해임포함)

총회

제 25 조 총회의 정의와 구성

1. 총회는 협회의 성원단체들이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회의이다. 총회는 협회의 최고립법권을 대표한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총회만이 결정권을 가진다.
2. 총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모든 축구관계자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할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축구에서 남녀평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정기총회 또는 특별총회로 소집할수 있다.
4. 총회는 위원장이 총회진행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5. 총회는 토의참가권이나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방청들을 참가시킬수 있다.
6. 명예위원장과 명예위원은 총회에 참가할수 있다. 그들은 문제토의에는 참가할수 있으나 투표권은 가지지 못한다.

제 26 조 총회대표와 투표

1. 총회는 36 개의 성원단체들로 구성한다. 총회의 대표구성은 다음과 같다.

- 1) 다음과 같은 순위에 있는 22 개의 구락부들은 각각 2 명의 대표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1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 부류축구련맹전순위 1 위-12 위

2 부류련맹전순위 1 위-3 위

3 부류련맹전순위 1 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자 1 부류축구련맹전순위 1 위-3 위

여자 2 부류련맹전순위 1 위-2 위

여자 3 부류련맹전순위 1 위

- 2) 14 개의 지역협회들은 각각 2 명의 대표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1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대표는 해당 성원단체에 소속된 성원으로서 성원단체의 해당 기구에서 임명하거나 선거하여야 한다. 협회가 요구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증빙문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집행위원회 성원과 서기장은 투표권없이 총회에 참가한다. 임기중에 있는 집행위원회 성원은 총회대표로 임명될수 없다.
4. 집행위원회는 투표권없이 참가하는 성원들을 총회에 초청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 27 조 총회의 권한

1.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총회회의록을 검사하기 위한 3 개의 성원단체를 임명하고 지난번 총회의 회의록을 승인한다.
3. 협회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집행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한다.
4.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법률집행기구와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장, 위원들을 선거한다.
5. 투표수를 계산하기 위한 투표검사원들을 임명한다.
6. 회계검증된 연간재정보고문건을 승인한다.
7. 예산을 승인한다.
8. 사업총화보고서(지난번 총회이후 협회가 진행한 사업내용)를 검토한다.
9.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을 임명한다.
10.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성원들에 대한 명예위원장, 명예위원직 수여를 결정한다.
11. 성원단체의 가입, 자격정지, 제명을 결정한다.
12. 이 규약 제 24 조에 따라 협회기구성원을 해임한다.
13. 협회를 해산한다.
14. 이 규약에 따라 성원단체가 제기한 문제 또는 이 규약에 따라 총회에 위임된 임의의 문제를 결정한다.

제 28 조 총회성립비율

1. 50%가 넘는 유권성원단체들이 참가하여야 총회가 성립된다.
2. 참가률이 보장되지 않으면 같은 안건으로 48 시간내에 총회를 다시 소집한다.
3. 총회를 다시 소집하는 경우 안건에 협회규약수정이나 협회위원장, 부위원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선거, 법률집행기구,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선거, 협회기구성원 해임, 성원단체의 자격정지 및 제명, 협회해산이 포함되어있지 않는 한 총회성립비율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 29 조 총회의 결정

1. 이 규약에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총회에 참가한 유권성원단체들의 50%가 넘는 지지를 받아야 결정이 채택된다.
2. 투표는 손을 드는 방법이나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손을 드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나 결정채택에 필요한 과반수가 명백치 않을 경우 성원단체들을 조선어자모순서로 호명하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아무것도 써넣지 않은 투표용지나 무효한 투표용지, 투표기권은 과반수계산에서 무시한다. 대리투표나 서신을 통한 투표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 30 조 선거

1. 선거는 협회선거규칙에 준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협회선거는 직위별로 진행한다.
2. 협회위원장으로 선거되려면 50%가 넘는 유효한 지지표를 받아야 한다. 위원장선거에 3 명이상의 후보자가 나섰을 경우 2 차투표부터는 2 명의 후보자만 남을 때까지 제일 적은 지지표를 받은 후보자를 제외한다.
3. 협회부위원장선거와 집행위원회 위원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표를 받는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이 선거는 일괄선거로 진행할 수 있다.

4. 협회법률집행기구와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지지표를 받는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이 선거는 일괄선거로 진행할 수 있다.

5. 임의의 기구선거에서 지지, 반대표수가 같은 경우 위에서 밝힌 절차에 따라 2 차례의 투표를 더 진행한다. 지지, 반대표수가 계속 같은 경우에는 이 규약에 따라 선거를 새로 진행하기 위한 선거총회를 다시 소집할 때까지 해당 직위를 비어둔다.

6. 아무것도 써넣지 않은 투표용지와 무효한 투표용지, 투표권은 과반수계산에서 무시한다.

7. 집행위원회 성원후보자는 성원단체들이 추천하며 선거총회날자 50 일전까지 후보자추천문건을 협회서기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법률 집행기구,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성원후보자는 집행위원회가 추천하며 선거총회날자 50 일전까지 후보자추천문건을 협회서기국에 보내주어야 한다. 후보자명단을 안전과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8. 임의의 공직에 후보자가 1 명만 나섰을 경우 박수로 찬성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선거할 수 있다. 대리투표나 서신을 통한 투표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 31 조 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해 진행한다.

2. 집행위원회가 총회장소와 날자를 정한다. 집행위원회는 총회날자 60 일전까지 서면으로 성원단체들에게 정기총회소집에 대하여 통지해 주어야 한다.

3. 성원단체가 총회에 제기하려는 문제는 총회날자 30 일전까지 간단한 설명문과 함께 협회서기국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공식통지는 총회날자 20 일전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공식통지와 함께 안건을 비롯한 총회관련문건들을 보내주어야 한다.

제 32 조 정기총회안건

1. 서기장이 집행위원회와 성원단체들의 제안에 기초하여 안건을 작성, 제기한다.
2. 총회안건에는 토의순서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 1) 협회규약에 따라 총회가 소집 및 구성되었다는 선언
 - 2) 투표검사원들의 임명
 - 3) 총회회의록을 검사하기 위한 성원단체들의 임명
 - 4) 성원단체들에 대한 자격정지 및 제명(제기되는 경우)
 - 5) 총회안건의 승인
 - 6) 지난번 총회회의록의 승인
 - 7) 위원장의 발언
 - 8) 사업총화보고서(지난번 총회이후 사업내용)의 검토
 - 9) 지난 회계기간에 해당한 회계검증된 재정보고문건의 승인
 - 10) 예산의 승인
 - 11) 규약수정안에 대한 투표(제기되는 경우)
 - 12) 이 규약 제 31 조 3.에 따라 성원단체와 집행위원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제기되는 경우)
 - 13)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의 임명(필요한 경우)
 - 14) 이 규약 제 24 조에 따라 협회기구성원의 해임(필요한 경우)
 - 15) 협회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집행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선거(필요한 경우)
 - 16) 법률집행기구와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선거(필요한 경우)
 - 17) 명예위원장, 명예위원직의 수여(필요한 경우)
 - 18) 성원단체의 가입(제기되는 경우)
 - 19) 협회의 해산(필요한 경우)

3. 총회에서는 안전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을 채택하지 않는다.
4. 총회에 참가한 유권성원단체들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총회안건을 수정할수 있다.

제 33 조 특별총회

1. 집행위원회는 임의의 시기에 특별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2. 3분의 1 이상의 성원단체들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특별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총회를 소집할데 대한 제기에는 안전에 포함시킬 문제들을 밝혀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제기를 받은 때로부터 90일내에 특별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집행위원회는 특별총회날자 20일전까지 성원단체들에게 장소와 날자, 안전을 통지하여야 한다.
4. 특별총회가 집행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소집되는 경우 집행위원회가 안전을 작성, 제기한다. 특별총회가 성원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는 경우에는 안전에 해당 성원단체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5. 특별총회안건은 수정할수 없다.

제 34 조 규약의 수정

1. 총회에서 규약을 수정한다.
2. 규약수정안은 성원단체 또는 집행위원회가 간단한 설명문과 함께 협회서기국에 서면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성원단체가 제기하는 수정안은 2개이상의 다른 성원단체들의 서면지지가 있어야 유효한것으로 된다.
3. 규약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유효한것으로 되려면 50%가 넘는 유권성원단체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4. 규약수정안이 채택되려면 총회에 참가한 유권성원단체들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제 35 조 회의록

서기장이 총회기록을 책임진다. 회의록은 지정된 성원단체들이 검열하고 다음번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제 36 조 결정의 효력발생날자

총회에서 통과된 결정은 총회에서 효력발생날자를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총회가 끝난 후 30 일이 지나서부터 효력을 가진다.

집행위원회

제 37 조 구성

1. 집행위원회는 11 명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1 명
 - 2) 부위원장 3 명
 - 3) 위원 7 명
2.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이 규약 제 30 조에 준하여 총회에서 선거한다. 집행위원회 성원들가운데서 1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4 년이다. 그들의 임기는 선거총회가 끝나면 즉시 시작된다. 위원장은 최고 3 기(련임 또는 비련임)까지 재선될수 있다. 부위원장들을 포함하여 집행위원회의 다른 모든 성원들도 최고 3 기(련임 또는 비련임)까지 재선될수 있다. 임기도중에 사임을 그만두어도 1 기의 임기를 다 채운것으로 계산한다.
4. 집행위원회 성원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 건강하여 자기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
5. 집행위원회 성원은 협회법률집행기구나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성원직을 겸임할수 없으며 협회총회에 성원단체대표로 참가할수 없다.

6. 집행위원회의 50%이하의 공직이 결원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음번 총회에서 남은 임기를 위한 교체성원들을 선거할 때까지 대리할 성원들을 임명한다.
7. 집행위원회의 50%가 넘는 공직이 결원되는 경우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남은 임기를 위한 교체성원들을 선거한다.
8. 집행위원회 성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또는 연속 3 차례 걸쳐 정기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직이 결원된것으로 본다.
9. 임의의 성원단체는 집행위원회의 1 개이상의 공직을 가질수 없다.

제 38 조 회의

1. 집행위원회 회의는 1 년에 4 차이상 진행한다.
2. 집행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또는 50%가 넘는 집행위원회 성원들이 요구하는 경우 20 일내로 소집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이 서기장의 방조하에 회의안건을 작성한다. 집행위원회의 모든 성원은 회의안건에 포함시킬 문제들을 제기할수 있다. 집행위원회 성원들은 회의날자 7 일전까지 안건에 포함시킬 문제들을 서기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의날자 3 일전까지 집행위원회 성원들에게 안건을 보내주어야 한다.
4. 서기장은 집행위원회 회의에 상담의 목적으로 투표권없이 참가한다. 서기장이 회의에 참가할수 없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하에 대리로 참가할 성원을 추천할수 있다.
5. 집행위원회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회의에 제 3 자를 참가시킬수 있으며 제 3 자는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고 집행위원회의 승인하에 의견만 발표할수 있다.

제 39 조 집행위원회의 권한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의 책임한계내에 속하지 않거나 법이나 이 규약에 따라 협회의 다른 기구가 처리할수 없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서기국의 방조하에 정기총회와 특별총회를 준비하고 소집한다.
3. 상설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을 임명한다.
4. 필요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 특별위원회를 내울것을 결정할수 있다.
5.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조직과 관련한 규정을 승인, 발표한다.
6.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서기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7.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을 선정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8. 다음번 총회에서 결원된 집행위원회와 법률집행기구,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의 교체성원들을 선거할 때까지 대리할 성원들을 임명한다.
9. 국가대표팀들의 감독들과 기타 기술보장성원들을 임명한다.
10. 이 규약을 적용하며 규약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다.
11. 다음번 총회까지 잠정적으로 협회기구성원을 해임하거나 성원 단체에 자격정지처벌을 준다.
12.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협회의 기타 기구들에 위임할수 있다.
13. 토의참가권과 투표권이 없는 방청들을 총회에 참가시킬수 있다.

제 40 조 결정

1. 집행위원회는 최소 7 명의 성원들이 참가하여야 유효한 문제 토의를 진행할수 있다.
2.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통과되려면 참가한 성원들의 50%가 넘는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지, 반대표수가 같은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를 한다. 대리투표나 서신을 통한 투표는 접수되지 않는다.
3.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나 가능성이 있는 집행위원회 성원은 문제토의나 결정채택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4. 채택된 결정은 회의록에 기록한다.
5. 집행위원회가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위원장

제 41 조 위원장

1. 위원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서명권을 가진다.
2. 위원장의 기본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정을 협회서기국을 통하여 실행한다.
 - 2) 이 규약에 밝혀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회기구들이 자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 3) 서기국의 사업을 감독한다.
 - 4) 협회와 성원단체, 국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 축구연맹, 기타 단체들과의 관계를 책임진다.
3. 서기장의 임명과 해임은 위원장만이 제안할수 있다.
4. 위원장은 총회와 집행위원회 회의, 자기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각 위원회 회의를 집행한다. 위원장이 참가할수 없는 경우 근무년한이 가장 오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5. 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일반투표를 하며 지지, 반대표수가 같은 경우 결정투표를 한다.
6. 이 규약 제 37 조 8.에 따라 위원장이 결원되는 경우 다음번 총회까지 근무년한이 가장 오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다음번 총회에서 남은 임기를 위한 위원장을 새로 선거한다.

서기국

제 42 조 서기국

1. 서기국은 서기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의 모든 행정사업을 처리한다.
2. 서기국은 자기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43 조 서기장

1. 서기장은 협회의 최고행정관리인이다.
2. 서기장은 집행위원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며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3. 서기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채택한 결정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한다.
 - 2) 총회와 집행위원회, 상설 및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한다.
 - 3) 총회와 집행위원회, 기타 기구들의 회의를 조직한다.
 - 4) 총회와 집행위원회, 상설 및 특별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작성을 책임진다.
 - 5) 협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 6) 성원단체들과 부문별위원회, 국제축구연맹, 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축구연맹, 기타 단체들과의 연계를 맡아한다.
 - 7) 서기국의 직원들을 임명, 해임한다.
4. 서기장은 총회대표나 협회의 기타 기구성원으로 될수 없다.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제 44 조 상설위원회

1. 협회의 상설위원회들은 다음과 같다.
 - 1) 재정위원회
 - 2) 경기위원회
 - 3) 기술위원회
 - 4) 녀성축구위원회
 - 5) 심판위원회
 - 6) 법률위원회
 - 7) 의료위원회
2.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은 집행위원회 성원이여야 한다. 각 상설위원회 성원들은 성원단체들이나 협회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임명한다. 상설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4 년이며 재임명될 수 있다.

3. 각 상설위원회들은 위원장 1 명, 부위원장 1 명, 최소 1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상설위원회는 자기 분야의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위원회에 조언과 방조를 준다.

5.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들은 협회서기국과 토의하여 회의날자를 정하며 위원회의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그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상설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집행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 45 조 재정위원회

재정위원회는 재정관리사업을 감독하며 재정문제와 재산관리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준다. 재정위원회는 협회의 예산과 재정보고문건을 분석하며 집행위원회와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 46 조 경기위원회

경기위원회는 이 규약과 해당 규정들에 준하여 협회의 경기 대회들을 조직운영하며 경기대회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 47 조 기술위원회

기술위원회는 축구훈련과 기술발전의 기본문제들을 분석하며 전반적인 기술문제에 대하여 집행위원회에 조언을 준다.

제 48 조 여성축구위원회

여성축구위원회는 이 규약과 해당 규정들에 준하여 여성축구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제 49 조 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국제축구경기규칙을 시행한다. 또한 협회가 조직하는 경기대회의 경기집행을 위한 심판원들을 임명하고 협회서기국과 협력하여 협회의 심판사업을 조직하며 심판원교육과 육성을 감독한다.

제 50 조 법률위원회

법률위원회는 협회 및 성원단체들의 규약, 규정의 갱신과 축구와 관련한 기본적인 법률문제들을 분석한다. 또한 국제축구련맹 선수지위 및 이전규정에 따르는 선수이전규정을 작성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며 협회경기대회들에 참가하기 위한 선수들의 지위를 규정한다.

제 51 조 의료위원회

의료위원회는 반도핑사업을 포함하여 축구의료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

제 52 조 특별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일정한 기간 조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의무와 기능은 집행위원회가 규정하며 특별위원회는 사업정형을 집행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기타 기구

제 53 조 구락부자격기구

구락부자격기구는 협회구락부자격규정과 아시아축구련맹 구락부자격규정에 준하여 협회의 구락부자격체계사업을 맡아한다. 구락부자격상소기구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이 규약에 따라 지정된 독자적인 중재재판소에만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가 구락부자격사업에 관한 규정을 승인한다.

제 54 조 선거위원회

1. 선거위원회는 협회선거규칙에 따라 선거를 조직하고 그 과정을 감독하는 기구이다. 선거위원회들에는 선거위원회(1 심기구)와 선거상소위원회가 속한다.
2. 선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협회선거규칙에 규제한다. 선거위원회(1 심기구)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선거상소위원회가 처리한다.

제 55 조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1.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는 재정회계사업의 정확성과 신용성에 대하여 책임지며 재정보고문건들과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의 회계검증보고서를 검토한다.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 위원 1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성원은 재정분야, 규정 및 법률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사업경험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협회운영에 영향을 주는 결정채택에 참가하지 말아야 한다.
2.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는 협회의 재정관리와 법준수정형을 감독하기 위한 집행위원회의 사업을 방조하고 감시하며 필요한 조언을 주는것과 함께 법준수체계를 확립하고 협회의 해당 규정들에 대한 준수정형을 감시한다. 또한 재정 및 법준수측면에서 서기국의 사업을 감시한다. 위원회는 협회의 재정사업과 법준수정형을 감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구들에 필요한 대책을 취할것을 제안한다.

법률집행기구

제 56 조 법률집행기구

1. 협회의 법률집행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1) 규률 및 룰리위원회
 - 2) 상소위원회
2. 각 법률집행기구들은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 명, 협회 규률 및 룰리규정에 규제된 인원수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3. 법률집행기구성원은 자기 직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지식과 능력, 경험을 가지고있어야 한다.
4. 법률집행기구성원의 임기는 4 년이며 재선될수 있다.

5. 법률집행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총회에서 선거하며 협회의 기타 기구성원으로 될수 없다.
6. 임기중에 있는 법률집행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자기 직무를 완전히 정지당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다음번 총회에서 남은 임기를 위한 새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을 선거할 때까지 대리할 성원을 임명한다.
7. 법률집행기구들의 책임과 기능은 협회의 규률 및 룰리규정에 규제한다.

제 57 조 규률 및 룰리위원회

1. 규률 및 룰리위원회의 기능은 협회의 규률 및 룰리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50%가 넘는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결정을 내릴수 있다.
2. 규률 및 룰리위원회는 이 규약과 협회의 규률 및 룰리규정에 규제된 모든 대상에 대하여 규약과 협회의 규률 및 룰리규정에 따르는 제재를 줄수 있다.
3. 이 조항은 성원단체의 자격정지 및 제명과 관련한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권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58 조 상소위원회

1. 상소위원회의 기능은 협회의 규률 및 룰리규정에 따른다. 위원회는 50%가 넘는 위원들이 참가하여야 결정을 내릴수 있다.
2. 상소위원회는 협회의 규률 및 룰리규정에 따라 최종으로 선언되지 않은 규률 및 룰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청취하는 책임을 지닌다.
3. 상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이 규약에 따르는 독자적인 중재재판소에만 제기할수 있다.

제5장 제재

제 59 조 제재

제재의 기본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인과 법인에 대한 제재
 - 1) 주의
 - 2) 벌금
2. 자연인에 대한 제재
 - 1) 경고
 - 2) 퇴장
 - 3) 일정한 회수의 경기 또는 일정한 기간 경기출전금지
 - 4) 팀탈의실과 선수대기석에 대한 출입금지
 - 5) 경기장출입금지
 - 6) 모든 축구관련활동에 대한 참가금지
 - 7) 각종 기술상박탈 및 시상품회수
3. 법인에 대한 제재
 - 1) 무관중경기 또는 관람자수제한
 - 2) 본거지경기장에서의 경기금지
 - 3) 특정한 경기장에서의 경기금지
 - 4) 이미 진행된 경기결과의 무효
 - 5)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앞으로 진행되는 경기대회의 참가자격박탈
 - 6) 경기에서 진것으로 선언
 - 7) 경기점수삭감
 - 8) 낮은 부류에로의 강급
 - 9) 경기 다시 진행
 - 10) 경기대회순위취소 및 시상품회수
 - 11) 경기 또는 경기대회수익금보류
 - 12) 국제, 국내경기대회참가를 위한 새 선수등록금지
 - 13) 국제, 국내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구락부의 선수등록인원수제한
 - 1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 녀 1 부류축구련맹전참가를 위한 구락부자격박탈

제6장 중재

제 60 조 중재

1. 이 규약과 해당 법조항에 따로 밝히지 않는 한 협회에 속한 단체나 구락부, 선수, 감독, 기타 축구관계성원들사이의 분쟁은 일반재판소에 의뢰할수 없다.
2. 위의 1.에 밝혀진 분쟁은 협회가 인정하는 독자적인 중재재판소나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체육중재재판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규약, 규정, 결정, 지시와 관련하여 협회나 성원단체가 연루된 분쟁은 오직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중재재판소(체육중재재판소)에서 중재할수 있으며 일반재판소에 의뢰하는것을 금지한다.

제 61 조 재판권

1. 협회내부절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규약 제 60 조에 따르는 중재재판소에 의뢰하여야 한다.
2. 협회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즉 협회에 소속된 단체나 개인들사이의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은 국제적인 분쟁, 즉 서로 다른 협회나 대륙축구연맹에 속한 단체나 개인들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재판권을 가진다.

제 62 조 체육중재재판소

1.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국제축구연맹 또는 아시아축구연맹 결정에 대한 상소는 국제축구연맹 규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체육중재재판소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협회는 국제축구연맹이나 아시아축구연맹의 기구, 협회가 인정하는 중재재판소, 스위스 로잔느에 있는 체육중재재판소의 최종결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협회의 재판권내에 있는 모든 대상들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제 63 조 회계기간

1. 협회의 회계기간은 1 년이며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다.
2. 회계기간 협회의 수입과 지출을 균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 64 조 수입

협회수입의 기본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1. 협회에 부여된 권한들로부터 산생되는 수입
2. 벌금
3. 기부금과 보조금
4.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을 포함한 국제기구들로부터의 협조금

제 65 조 지출

협회지출의 기본형태들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에 밝힌 지출
2. 총회에서 승인한 기타 지출과 집행위원회의 권한에 따르는 지출
3. 협회의 사명에 따르는 기타 지출

제 66 조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

총회에서 임명한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은 해마다 재정위원회에서 승인한 회계문건들을 해당한 회계원칙에 따라 검증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한다. 독자적인 회계검증기관은 4 년을 기한으로 임명하며 임명기한을 연기할수 있다.

제8장 경기대회, 경기대회 및 행사에 대한 권리

제 67 조 경기대회

1. 협회는 자기 영역내에서 경기대회를 조직하고 경기대회와 관련한 제재를 줄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의 경기대회는 이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집행위원회는 성원단체에 경기대회조직권한을 위임할수 있다.

제 68 조 권리

1. 협회와 성원단체는 내용과 시간, 장소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 관할권에 따라 조직된 경기대회나 기타 행사들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권리의 기본소유자로 된다. 이러한 권리에는 모든 형태의 재정권과 저작권, 지적소유권, 상업권, 방영권 등이 포함된다.
2.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권리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까지 이용되는가를 규제하며 이와 관련한 규정을 승인한다.

제 69 조 자료배포의 위임

협회와 성원단체는 그 어떤 제한을 받음이 없이 자기 관할권에 따라 조직된 경기나 행사와 관련한 화상 및 음성, 기타 자료의 배포를 위임할수 있다. 집행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승인한다.

제9장 국제경기 및 경기대회

제 70 조 국제경기 및 경기대회

1. 협회대표팀들사이 또는 구락부들사이에 진행되는 국제경기 및 경기대회조직과 관련한 권한은 국제축구연맹이나 해당 대륙축구연맹 또는 성원협회가 가진다. 국제축구연맹 국제경기관리규정에 따라 국제축구연맹과 해당 대륙축구연맹 또는 성원협회의 사전승인이 없이 그 어떤 국제경기나 경기대회도 진행할수 없다.
2. 협회는 국제축구연맹이 정한 국제경기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71 조 런계

협회와 성원단체는 국제축구련맹의 승인이 없이 국제축구련맹에 가입하지 않은 축구협회나 대륙축구련맹의 임시성원협회와 경기나 체육교류를 진행할수 없다.

제 72 조 승인

국제축구련맹 국제경기관리규정에 따라 협회에 소속된 구락부는 협회와 다른 성원협회, 국제축구련맹과 해당 대륙축구련맹의 승인이 없이 다른 성원협회의 영역내에서 진행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수 없다.

제10장 마감조문

제 73 조 규약에 밝히지 못한 문제

집행위원회는 이 규약에 밝히지 못하였거나 불가항력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제 74 조 협회의 해산

1. 협회의 해산과 관련한 결정은 총회에서 4 분의 3 이상의 성원 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야 채택된다.
2. 협회가 해산되는 경우 모든 자산은 협회가 다시 조직될 때까지 국내의 해당 기관에 위탁한다.

제 75 조 효력발생

이 규약은 2020 년 9 월 21 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축구협회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규약 제 36 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제 76 조 잠정조항

1. 이 규약 제 12 조에 규제된 성원단체들은 규약채택날자부터 12 개월내에 이 규약 제 13 조 2.에 따르는 의무사항들을 리행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우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리행하지 못하는 성원단체는 자동적으로 총회투표권을 상실하며 총회성립비률계산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성원단체는 이 조항에 따르는 의무를 모두 리행한 다음에야 총회투표권을 다시 가질수 있다.

2. 이 규약 제 37 조 3.에 규제된 임기제한은 이 규약이 채택된 이후에 진행되는 집행위원회 선거에서부터 적용한다.

3. 이 규약이 채택된 다음 집행위원회는 이 규약 제 44 조부터 제 51 조에 규제된 상설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한다.

4. 규약채택날자부터 12 개월내에 총회에서 이 규약 제 54 조와 제 55 조에 규제된 선거위원회, 회계검증 및 감사위원회 성원들을 선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위원장 리룡남

서기장 김장산

(부록)

총회진행절차

제 1 조 의장

1. 협회위원장이 총회의장으로 된다. 위원장이 참가할수 없는 경우 사업년한이 가장 오랜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부위원장들이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는 집행위원회 위원들가운데서 의장을 선거한다.
2. 의장은 총회가 철저히 총회진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한다. 또한 총회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의 개회와 폐회, 토론의 시작과 결속, 대표들에 대한 언권승인, 모든 안건토의를 집행하는것은 의장이 한다.
3. 의장은 안건토의시 질서유지를 책임진다. 의장은 토론을 방해하는 임의의 총회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 1) 질서를 지킬데 대하여 주의를 준다.
 - 2) 추궁한다.
 - 3) 1 차례 또는 그 이상의 안건토의에 참가시키지 않는다.
4. 우와 같은 조치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총회에서 토의없이 즉시 결정한다.

제 2 조 투표검사원

총회의 첫 단계에서 투표수를 계산하고 서기장을 방조하여 선거투표용지를 배포, 계산하기 위한 적당한 인원수의 계산원들을 임명한다.

제 3 조 토론

1. 매 안건에 대한 토론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성원들이 간단한 보고를 한다.
 - 1) 의장 또는 지정된 집행위원회 성원
 - 2)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해당 위원회대표
 - 3) 해당 문제를 안건에 포함시켜줄것을 제기한 성원단체의 대표
2. 보고가 끝난 후 의장은 토론을 시작한다.

제 4 조 발언자

1. 발언권은 요구한 순서에 따라 준다. 발언자는 승인을 받기 전에는 발언을 시작할수 없다. 발언자는 발언을 위하여 설치된 연단에 나와 발언하여야 한다.
2. 한번 발언한 대표는 발언권을 요구한 다른 대표들의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다시 발언할수 없다.

제 5 조 제안 및 제의

1. 모든 제안은 서면으로 제출한다. 토론중에 있는 문제와 련관이 없는 제안은 토론에서 제외시킨다.
2. 총회를 휴회할데 대한 제의가 상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투표가 끝날 때까지 모든 문제토론을 중지한다.
3. 토론을 그만두자는 제의가 상정되는 경우 토의없이 그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이 제의가 승인되면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발언권을 요구한 성원단체대표들에 한해서만 발언권을 준다.
4. 총회에서 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의장이 토론을 결속한다.

제 6 조 투표

1. 원칙적으로 투표는 손을 드는 방법이나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투표는 강요하지 않는다.
2. 총회에서 매번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장이나 의장이 지정한 성원이 투표로 결정할 제안문을 큰 소리로 낭독하고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한다. 반대의견이 제기되는 경우 총회에서 즉시 결정한다.
3. 투표는 제안이 제기된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4. 의장이 투표결과를 검토하고 총회에 발표한다.
5. 투표가 시작되면 투표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누구도 발언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7 조 선거

선거는 협회선거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8 조 효력발생

이 규칙은 2020 년 9 월 21 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이 규약 제 36 조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위원장 리룡남

서기장 김장산